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CIF”라 함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화물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상품”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생산과정에서 재료로써 추후 사용될 것이라 해도, 완전획득 또는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이 포함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 이란 용어와 “생산품”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발효되고 그 후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코드체계의 용어체계를 말한다.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부분품, 하위 조립품이 포함된다.

“비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그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생산”이라 함은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뒹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제2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조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2조 제1항 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뒷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¹⁾ 권리²⁾를 국제법²⁾상 가져

1) 각 당사국들은 어로 생산품 및 다른 어로 생산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3조 바호의 권리는 어느 당사국과 그 연안국 정부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받은 사적단체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다른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 접근권을 포함한다.

2) 제3조 바호의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을 말한다.

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제4조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1항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³⁾.

가. 집적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5조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조의 목적상,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3) 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여된다.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계산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제6조 특정상품의 취급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품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서, (즉, 공업지구)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그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례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8조 불인정 공정

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⁴⁾ 세척, 세정,

4.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거

라. 단순한⁴ 도장 및 광택 공정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사. 단순한⁴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아. 연마, 단순한⁴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

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⁵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하. 단순한⁴ 실험 또는 측정

거. 동물의 도축⁶⁾

2.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5.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

유지한다.

제9조
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제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페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제 11조 포장재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을 따르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의 가격은 그 포장재가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는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에는,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재료가 그 상품의 세 번 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 수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이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제13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원산지는 판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공구, 틀 및 금형

다.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건물 및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14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1. 상품의 원산지 확정의 목적상, 그 상품이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혼합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때,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수출국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나 실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 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 연도 동안 계속 사용된다.

제15조 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6조 협의, 검토 및 수정

-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규정들이 이 부속서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 통일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 이 부속서는 필요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고 기본 협정 제5.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제17조 제도규정

기본협정 제5.3조의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원산지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이 부속서 및 부록 1에 규정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일반 규정의 감독과 이행에 책임지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분쟁해결

- 원산지 결정, 어떤 상품의 분류 또는 이 부속서 및 부록 1의 이행과 관

련한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계정부 당국의 차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보 교환 차원에서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협의를 통해 차이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당사국은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정의

제1조

이 부록의 목적상:

“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령¹⁾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물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물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여야 한다.

발급기관

1)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시행 및 집행되는 그러한 법령으로서, 물품의 수입, 수출 및 경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각 당사국 관세당국의 경계를 지나는 통제항목의 이동에 관한 관세, 부과금 그리고 그 밖의 세금,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제2조

-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 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4.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이 갖추어야 한다.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는 제3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려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 표기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근거는 적법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7.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사유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3. 일방 당사국의 요청시 당사국은 본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으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

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자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다호는 문제되는 당해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기록보관 의무

제13조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검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²⁾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³⁾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후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2. 한국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된 발급기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그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당국을 말한다.

3. 6월 이내의 기간과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일 전후 또는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사이의 6월의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수행에 앞서,

가. 수입 당사국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

(2)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4)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이름

(3) 현지조사 방문예정일

(4) 현지조사 대상물을 포함한 방문예정 현지조사의 범위

(5)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조사 대상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어야 한다.

3.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재개된다.

5.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물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현지조사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현지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최장 6월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16조

-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하는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당사국의 국내법령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 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례

제18조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전 또는 도착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가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품이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러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 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운송도중 목

적지가 변경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20조

1. 부속서 3 제9조에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고 전시기간 중 또는 전시후에 일방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하여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물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수입 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

실

다. 물품이 전시회 기간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발송한 사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장소가 표시되어야 하여야 한다. 물품의 확인 및 그 전시 상태에 대한 증빙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의 관련 정부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19조 라호에 규정된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은 전시물품이 전기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물품판매목적의 모든 무역,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람회, 또는 상점내 또는 사업장내 전시에 적용된다.

제21조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2조

1.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세 연락창구

제23조

1.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서 부속서 3 관련 문제를 타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연락창구는 이 부속서 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 번호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간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AK 발행국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 (야는 범위까지 기재)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input type="checkbox"/>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에 의한 특혜대우 <input type="checkbox"/> 특혜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FOB)	10. 송장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국가)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3. <input type="checkbox"/> 제 3 국 송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 증명서					

뒷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다.

2. 조건 : AKFTA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물품은,

- (i) 목적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의 최초 국가내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p>"CTC"</p> <p>-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p> <p>-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y</p> <p>- 역내부가가치 (RVC)</p> <p>- 역내부가가치 + 세번변경</p> <p>- 특정 공정</p>
(마)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p>"WO-AK"</p> <p>"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 예 . "RVC 45%"</p> <p>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CTH + RVC 40%"</p> <p>- 특정 공정</p> <p>"제6조 "</p>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5. 품명 : 물품의 명세는 그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물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6.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7.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8.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9.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10. 전시물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해 팔린 경우, "전시물품"란에 (✓)로 표시된다.

11.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용절차 제7조2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란에 (✓)로 표시한다.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산 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3		03.01	활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6		0304.1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		0304.2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		0304.9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9		0305.1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		0305.2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		0305.30	-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12		0305.41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챠비챠·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13		0305.4 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		0305.4 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15		0305.5 1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		0305.5 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17		0305.6 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 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		0305.6 2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		0305.6 3	-- 멸치(엔그로리스 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		0305.6 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냉동한 것	
21		0306.1 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 자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		0306.1 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		0306.1 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		0306.1 4	-- 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5		0306.1 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냉동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6		0306.2 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7		0306.2 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8		0306.2 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9		0306.2 4	-- 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0		0306.2 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31		0307.1 0	- 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가리비과의 조개(（笑）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笑）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32		0307.2 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3		0307.2 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34		0307.3 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		0307.3 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갑오징어(세파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파울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파오투디스종)	

36		0307.4 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7		0307.4 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문어(옥토푸스종)	
38		0307.5 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9		0307.5 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0		0307.6 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감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41		0307.9 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2		0307.9 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43		0401.1 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4		0401.2 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5		0401.3 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6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47	04.03		버터밀크·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로부터의 재료를, 우유로부터의 총 원료의 중량 대비 50%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인 것.
49		0404.90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0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테어리 스프레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4.06	치즈와 커드	
51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2		0406.2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3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될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로부터의 재료를, 우유로부터의 총 원료의 중량 대비 50%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54		0406.40	- 블루바인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5		0406.90	- 기타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6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7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8		04.09	천연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9		04.10	파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0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61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2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겹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63		0801.1 1	- - 말린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4		0801.1 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브라질넛	
65		0801.2 1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6		0801.2 2	- - 탈각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캐슈넛	
67		0801.3 1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8		0801.3 2	- - 탈각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9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0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파아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71		0804.1 0	- 대추야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2		0804.2 0	- 무화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3		0804.3 0	- 파인애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4		0804.4 0	- 애버카도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5		0804.5 0	- 파아비·맹고 및 맹고스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6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7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8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9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0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생산되었을 것
81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2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3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및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84		0813.1 0	- 살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5		0813.2 0	- 프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6		0813.3 0	- 사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7		0813.4 0	- 기타 과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8		0813.5 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9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커피(볶지 아니한 것)	
90		0901.1 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1		0901.1 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커피(볶은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2		0901.2 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3		090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2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4		0901.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95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6		09.03	마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97		0904.11	-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8		0904.12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99		0904.20	-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0		09.05	바닐라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101		0906.10	- 분쇄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2		0906.20	-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03		09.07	정향(파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4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5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106		0910.10	- 생강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7		0910.20	- 샤프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8		0910.30	- 심황(강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9		0910.40	- 타임 및 월계수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		0910.50	- 카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기타 향신료	
111		0910.91	- -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 to this Chapter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2		0910.99	-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3	제 10류		곡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4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5	1102.1 0	- 호밀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6	1102.2 0	- 옥수수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7	1102.3 0	- 쌀가루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8	1102.9 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가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분쇄물 및 조분		
119	1103.1 1	- - 밀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0	1103.1 3	- -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1	1103.1 9	-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22		1103.20	-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빽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23		1104.12	- - 귀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24		1104.19	-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빽은 것)		
125		1104.22	- - 귀리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6		1104.2 3	- - 옥수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7		1104.2 9	- - 기타 곡물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8		1104.3 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29		1105.1 0	-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0		1105.2 0	- 플레이크·입(粒) 및 펠리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1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2		1107.1 0	- 볶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3		1107.2 0	- 볶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4		11.08	전분과 이눌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5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6	제 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7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페틴질, 페티닝산염과 페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8		1302.1 1	- - 아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9		1302.1	- - 감초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2		생산되었을 것
140		1302.1 3	- - 호프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1		1302.1 4	- -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2		1302.1 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3		1302.2 0	- 펙틴질·펩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4		1302.3 1	- - 한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70%이상인 것
145		1302.3 2	-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6		1302.3 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7	제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납				
	제 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48		1515.5 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5.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49		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50		1517.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51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52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53		1602.20	- 동물간장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154		1602.31	- 칠면조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5		1602.3 2	- - 닭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6		1602.3 9	-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폐지의 것		
157		1602.4 1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58		1602.4 2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9		1602.4 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		1602.5 0	- 소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1		1602.9 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2		1604.1 1	- -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3		1604.1 2	- - 청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4		1604.1 3	-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5		1604.1 5	- - 고등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6		1604.1 6	- -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7		1604.1 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8		1604.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0		16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9		1604.3 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70		1605.1 0	- 계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171		1605.2 0	- 새우와 보리새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172		1605.3 0	- 바다가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3		1605.4 0	- 기타 갑각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4		1605.9 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털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및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75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76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77		1901.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날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8		1904.90	- 기타		한국의 HS 제 1904.90.100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9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상품의 소호에서 다른 소호로 제공되지 않은 한 최소허용기준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179		1905.31	- - 스위트 비스킷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0		1905.32	- - 와플과 웨이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1		1905.9 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182		2003.9 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83		2005.9 0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한국의HS 제 2005.90.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84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설탕을 입히거나설탕에 절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5		2008.1 1	- - 낙화생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86		2008.1 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87		2008.2 0	-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188		2008.9 2	- -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9		2008.9 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09	파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파인애플쥬스		
190		2009.4 1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1		2009.4 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사과쥬스		
192		2009.8 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93		2009.9 0	- 혼합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194		2101.2 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195		2103.9 0	- 기타		한국의HS 제 2103.90.1030호, 제 2103.90.9030호, 제 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96		2106.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197		2202.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98		22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9		22.03		맥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00		2204.2 1	- -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1		2204.2 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중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02		2208.2 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중류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3		2208.3 0	- 위스키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4		2208.7 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05		2301.2 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06		2306.5 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6.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07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08		2309.9 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 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09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10		2402.2 0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 29류				유기화학품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활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211		2921. 21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2		2921. 2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콜(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3		2922. 12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4		2922. 13	-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5		2922. 41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6		2923. 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 정유(감귤류 외의 것)	
217		3301.30	- 레지노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33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18		3301.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제 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219		4011.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		4011.20	-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221		4011.40	- 모터싸이클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				
제 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0.2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 장갑류	
222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42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50류		견		
223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4		50.02	생사(끈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5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6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7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8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제50.04호에서 제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9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230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1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2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3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4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5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6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7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8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51.06호에서 제5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9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침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0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1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2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 52류	면		
243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4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5	52.0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6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7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8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9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2.04호에서 제5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50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1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2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3	53.04		사이잘마와 아케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4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5	53.06		아마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6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7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8	53.09		아마직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9	53.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0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4류		인조필라멘트		
261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2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3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4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5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것(예: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66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67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8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9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0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1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2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3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4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5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6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7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5.08호에서 제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5.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78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9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0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1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2		56.05	금속드리사(침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3		56.06	침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게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침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침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4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5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6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287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8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럼·슈맥·카라미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9		57.03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0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1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파자수포	
292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3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94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5		58.04	튜올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및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6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7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불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8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9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품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0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계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1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2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303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겸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베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4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5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6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7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8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9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0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1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2		59.10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3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7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314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원드치터·원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5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원드치터·원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6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7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8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9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0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1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 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2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3	61.10		저지·풀오버·가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4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5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2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6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7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8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9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0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331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포함한다)·원드치터·원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2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원드치터·원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3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4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5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6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에 한한다.
337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8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8

			기타 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9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0	62.10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1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2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3	62.13		손수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에서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4	62.14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5	62.15	넥타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6	62.16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7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348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9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0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1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2	63.05	포장용의 빙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3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4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5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스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6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7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 기타		
358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 및 91 앤더바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59	6811. 20	- 기타 쉬트·판넬·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81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360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웬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웬 것을 포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361	7102. 1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의 것		
362	7102. 21	-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3	7102. 2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이 아닌 것		
364	7102. 31	-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5	7102. 3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젠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젠 것을 포함한다)	
366		7103.10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7		7103.91	- -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8		7103.9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젠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젠 것을 포함한다)	
369		7104.10	- 압전기용 석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0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1		7104.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372		710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3		7113. 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4		7113. 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5		7114. 11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6		7114. 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377		7115. 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378		7116. 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9		7116. 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비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80		7117. 11	-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1		7117. 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제 72류		72.09	철강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여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383		7220. 11	-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4		7220. 12	- -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74류		74.08	동과 그 제품 동의 선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6		74.13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76류		76.05	알루미늄과 그 제품 알루미늄의 선	제 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387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8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괴	
389	8104. 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임,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1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택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대상의 스테이플(예:사무실용·가구류용·포 장용의 것)		
390	8305. 10	- 서류철용 피팅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1	8305. 20	- 대상의 스테이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2	8305.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393	8415.	- 창문형 또는 벽형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10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가격의 45%이상일 것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394		8479.81	-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5		8479.8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396		8482.10	- 볼 베어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 기타의 변압기	
397		8504.50	- 기타의 유도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04.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398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9		8518.50	- 음향증폭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9		턴테이블(레코드	

			텍)·레코드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턴 테이블(레코드 텍)	
400		8519.31	-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9.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2	제8519호 및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01		852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402		8525.2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3		8528.12	- - 천연색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8.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9	부분품(제8525호 및 제8528호에 제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04		85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		85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405		8532. 22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2.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 지역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접 속함).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406		8536. 10	- 퓨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07		8539. 21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08		8539. 31	-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9		8539. 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 비전용 촬상관)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410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및 기타의 광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1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간격이 0.4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2		8540.60	- 기타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마이크로웨이브관(예:자전관·속 도변조관·진행파관·카시노트론) 단, 그리드제어관을 제외한다.	
413		8540.71	- - 자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14		8540.72	- - 속도변조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의 관	
415		8540.8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416		8540.91	- -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417		8541.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418		8543.8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3.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419		8702.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0		87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 기관의 것에 한한다)	
421		8703.21		- -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2		8703.22		- - 실린더용량 1,000시이시이초과 1,500시이시이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3		8703.23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초과 3,000시이시이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4		8703.24		- - 실린더용량 3,000시이시이 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425		8703.31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6		8703.32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초과 2,500시이시이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7		8703.33		-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이 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8		8703.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90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429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 기타 압축점화식의 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0		8704.21	-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1		8704.22	- - 총중량 5톤초과 20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2		8704.23	- - 총중량 20톤초과의 것 - 기타(불꽃점화식의 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3		8704.31	-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4		8704.32	- - 총중량 5톤 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5		8704.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및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436		8708.94	- -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7		8708.99	-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8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제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부교·탱크·코오퍼댐·부간교·부표·수로부표)	
439		8907.10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0%이상인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대물렌즈	
440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1		9002.1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2		9002.20	- 필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3		900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0부 잡품

제 94류	94.03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3.30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444		- 사무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5		- 주방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6		- 침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7		- 기타의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부록 3

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1. 역내부가가치기준 계산방식

부속서 3 제5조의 목적상, 부록 2에 상세된 상품의 역내부가가치는 부속서 3 제4조의 2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2.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공정

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수행된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

나. 종횡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다.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이랫과 같은 장식품을 입고, 누비고, 잇고 부친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

라.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

마. 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자수 상품의 총 중량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3. 농산물 및 원예상품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씨, 봉우리, 대목, 잘라진 가지, 접지 또는 다른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4. 양식 수산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길러진 수산물은 보통 플랑크톤, 알테미아와 같은 시원 사료로 사육된 알, 치어, 유어, 새끼뱀장어 또는 새끼굴로부터 길러졌다하더라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6년 8월 2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경제장관

장관 귀하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되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해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의 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요하지 않는, 제1항 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¹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

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²에 의해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통관 절차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검증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 증가된 양 또는 어떤 조건하에 수입되어 그 국내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켰거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그러한 피해와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²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 및 지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자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 조건이 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 (2) 추가적인 협의 의무가 없다.
-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 (1)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간 수입국에 대해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한,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에 기초하고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가능성 을 가진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 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귀하게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현종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조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사무총장
옹케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관

립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르나이 다루살람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마리 엘카 평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2006년 8월 24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아래와 같은 2006년 8월 24일자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 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되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해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의 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 공정을 요하지 않는, 제1항 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¹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²에 의해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통관 절차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검증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2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 증가된 양 또는 어떤 조건하에 수입되어 그 국내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켰거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그러한 피해와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 및 지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자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 조건이 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 (2) 추가적인 협의 의무가 없다.
-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

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 (1)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간 수입국에 대해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한,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 (2) 수입 당사국은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에 기초하고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가능성을 가진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 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양해를 공유함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서명/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르나이 다루살람

/서명/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서명/

마리 엘카 광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서명/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서명/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서명/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

/서명/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서명/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서명/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브루나이 다투살람

연번	HS 코드	품명
1	4016.99	- - 기타
2	4202.11	-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3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4	4202.19	- - 기타
5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6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셔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7	4202.91	-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9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셔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9	4202.99	- - 기타
10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11	6107.11	면제의 것
12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07.91	- - 면제의 것
15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16	61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7	6108.21	- - 면제의 것
18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0	6108.91	- - 면제의 것
21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 -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3	6109.10	- 면제의 것
24	6111.20	- 면제의 것
25	6115.19	- -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6	6115.20	-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27	6115.92	- - 면제의 것
28	6115.93	- -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5.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34	6201.12	면제의 것
35	6201.13	- -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 - 면제의 것
37	6201.93	- -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 - 면제의 것
39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40	6202.92	- - 면제의 것
41	6202.93	- - 인조섬유의 것
42	62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44	6203.2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5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6	6203.32	- - 면제의 것
47	6203.33	- - 합성섬유제의 것
48	6203.42	- - 면제의 것
49	6203.43	- - 합성섬유제의 것
50	6203.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1	6204.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2	6204.12	- - 면제의 것
53	6204.13	- - 합성섬유제의 것
54	6204.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5	6204.32	- - 면제의 것
56	6204.33	- - 합성섬유제의 것
57	6204.3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8	6204.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9	6204.42	- - 면제의 것
60	6204.43	- - 합성섬유제의 것
61	6204.44	-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2	6204.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	6204.5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4	6204.52	- - 면제의 것
65	6204.53	- - 합성섬유제의 것
66	6204.5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7	6204.6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8	6204.62	- - 면제의 것
69	6204.63	- - 합성섬유제의 것
70	6204.6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1	6205.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72	6205.20	- 면제의 것
73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74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76	6206.30	- 면제의 것
77	6206.40	- 인조섬유제의 것
78	62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9	6207.21	면제의 것
80	6211.20	- 스키슈트
81	6211.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2	6211.42	- - 면제의 것
83	6211.43	- - 인조섬유제의 것
84	6212.10	브래지어
85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86	6212.90	- 기타
87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8	6213.20	면제의 것
89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0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91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92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93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4	6216.00	장갑류
95	8424.90	부분품
96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7	9113.90	기타
98	9502.1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99	9503.41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100	9503.49	- - 기타

캄보디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쎔-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6.90	- 기타
11	6107.11	- - 면제의 것
12	6107.12	- -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07.91	- - 면제의 것
15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16	61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7	6108.21	- - 면제의 것
18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6108.91	- - 면제의 것
21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3	6111.20	- 면제의 것
24	6114.20	- 면제의 것
25	6115.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6	6115.20	-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27	6115.92	- - 면제의 것
28	6115.93	- -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5.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34	6201.12	- - 면제의 것
35	6201.13	- -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 - 면제의 것
37	6201.93	- -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 - 면제의 것
39	6202.13	- - 인조섬유제의 것
40	6202.92	- - 면제의 것
41	6202.93	- - 인조섬유의 것
42	62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44	6203.2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5	6203.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6	6203.32	- - 면제의 것
47	6203.33	- - 합성섬유제의 것

48	6203.42	- 면제의 것
49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50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1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2	6204.12	- 면제의 것
53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54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5	6204.32	- 면제의 것
56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57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8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9	6204.42	- 면제의 것
60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61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2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4	6207.21	- 면제의 것
65	6212.10	- 브래지어
66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67	6212.90	- 기타
68	6213.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69	6213.20	- 면제의 것
70	6401.10	-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71	6401.91	- 무릎을 덮는것
72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73	6401.99	- 기타
74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75	6402.19	- 기타
76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력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77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78	6402.91	- 발목을 덮는것
79	6402.99	- 기타
80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 부츠
81	6403.19	- 기타
82	6403.20	- 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염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83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84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85	6403.51	- 발목을 덮는것
86	6403.59	- 기타
87	6403.91	- 발목을 덮는것
88	6403.99	- 기타
89	6404.11	- 스포츠용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90	6404.19	- 기타
91	6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92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것
93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4	6405.90	- 기타
95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96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97	6406.91	- 목재제의 것

98	6406.99	- - 기타 재료제의 것
99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0	8413.30	- <u>연료·윤활유급유용</u>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파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인도네시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기타
2	3907.10	아세탈수지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셧-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	4016.99	기타
7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	4202.19	기타
10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11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2	4202.29	기타
13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14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15	4202.99	기타
16	4203.10	의류
17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8	5810.91	면제의 것
19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20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21	6302.31	면제의 것
22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23	6302.51	면제의 것
24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25	6302.60	면제의 토일랫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26	6302.91	면제의 것
27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28	6303.91	면제의 것
29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30	6304.19	기타
31	6304.92	면제의 것(메리아스펜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32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33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34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35	7419.99	기타
36	8207.30	프레싱·스탭핑 또는 편침용의 공구
37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38	8215.99	기타
39	8413.30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40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41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42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43	8421.29	기타
44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45	8424.90	부분품

46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7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8	8504.31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49	8504.40	정지형 변환기
50	8504.90	부분품
51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2	8512.90	부분품
53	8516.80	전열용 저항체
54	8517.90	부분품
55	8529.90	기타
56	8534.00	인쇄회로
57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58	8536.50	기타의 개폐기
59	8536.69	플러그와 소켓
60	8536.90	기타의 기기
61	8538.90	기타
62	8539.29	기타
63	8539.39	기타
64	8540.91	음극선관의 것
65	8543.89	기타
66	8544.41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67	8544.70	광섬유 케이블: [ITA1/A-099]
68	8714.99	기타
69	9013.80	기타의 기기
70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1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2	9101.19	기타
73	9101.21	자동권식의 것
74	9101.29	기타
75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76	9101.99	기타
77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8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2.19	기타
80	9102.21	자동권식의 것
81	9102.29	기타
82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83	9102.99	기타
84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5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6	9111.80	기타의 케이스
87	9111.90	부분품
88	9112.20	케이스
89	9112.90	부분품
90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91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2	9113.90	기타
93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4	9114.20	시계용 보석
95	9114.30	문자판
96	9114.40	지판과 브리지

97	9114.90	기타
98	9404.90	기타
99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100	9503.49	기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셧-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	4016.99	-- 기타
7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	4202.19	-- 기타
10	4202.21	--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11	4202.2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2	4202.29	-- 기타
13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14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15	4202.99	-- 기타
16	4203.10	- 의류
1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8	6115.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9	6115.20	-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20	6115.92	-- 면제의 것
21	6115.93	-- 합성섬유제의 것
22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3	6211.20	- 스키슈트
24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25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 부츠
26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27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	7113.19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30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31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32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33	7117.19	-- 기타
34	7117.90	- 기타
35	7315.20	- 스키드 체인
36	7419.99	-- 기타
37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편평용의 공구
38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39	8215.99	-- 기타
40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1	8413.30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42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43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44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45	8421.29	- - 기타
46	8421.31	-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47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8	8480.71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9	8504.31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50	8504.40	- 정지형 변환기
51	8504.90	- 부분품
52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3	8512.90	- 부분품
54	8516.80	- 전열용 저항체
55	8534.00	인쇄회로
56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57	8536.50	- 기타의 개폐기
58	8536.69	- - 플러그와 소켓
59	8536.90	- 기타의 기기
60	8538.90	- 기타
61	8539.29	- - 기타
62	8539.39	- - 기타
63	8540.91	- - 음극선관의 것
64	8543.89	- - 기타
65	8544.41	- -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66	8544.70	- 광섬유 케이블
67	9013.80	- 기타의 기기
68	9101.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9	9101.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70	9101.19	- - 기타
71	9101.21	- - 자동권식의 것
72	9101.29	- - 기타
73	9101.91	- - 전기구동식의 것
74	9101.99	- - 기타
75	9102.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6	9102.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7	9102.19	- - 기타
78	9102.21	- - 자동권식의 것
79	9102.29	- - 기타
80	9102.91	- - 전기구동식의 것
81	9102.99	- - 기타
82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3	9111.20	-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4	9111.80	- 기타의 케이스
85	9111.90	- 부분품
86	9112.20	- 케이스
87	9112.90	- 부분품
88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9	9113.20	-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0	9113.90	- 기타
91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2	9114.20	- 시계용 보석
93	9114.30	- 문자판
94	9114.40	- 지판과 브리지
95	9114.90	- 기타

96	9502.1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 의여부를 불문한다)
97	9502.91	-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8	9503.41	-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99	9503.49	- - 기타
100	9503.90	- 기타

말레이시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기타
2	392330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의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플라스틱의 것에 한한다)
3	392690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제의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4	4016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5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6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7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	420229	외부표면이 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10	420292	기타
11	420321	볼링용 팔목가드
12	581092	방직용 직물을 기재로 한 인조섬유제의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포는 제외한다)
13	610899	여자 또는 소녀용의 네글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하우스자켓 및 유사한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면제의 것 내지 인조섬유제·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브래지어·거들·콜셋 및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14	611599	등신 또는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방직용 섬유제의 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면제 또는 합성섬유제의 것, 팬티호스·타이즈 및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의 등신 또는 무릎까지 오는 여성용 스타킹 및 유아용 메리야스는 제외한다)
15	611710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6	611720	넥타이류
17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18	620192	면제의 것
19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0	620212	면제의 것
21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2	620292	면제의 것
23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4	620319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슈트(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내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의 것,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은 제외한다)
25	620469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제, 면제의 것 내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의 것, 팬티 및 수영복은 제외한다)
26	620590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셔츠(양모 또는 섬수모제, 면제의 것 내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제의 것, 나이트셔츠·싱글리트 및 기타조끼는 제외한다)
27	621142	기도클록
28	621143	기도클록
29	621290	기타
30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31	621320	면제의 것
32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3	621410	기도 스카프
34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35	621430	기도 스카프
36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7	6216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8	630392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합성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물 내지 뜨개질 편물의 것, 천막 및 차양은 제외한다)
39	640219	바깥 바닥 및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포츠용 신발류(제6401호의 방수 신발류·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및 아이스 내지 로울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제외한다)
40	640220	바깥 바닥 및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 (갑피끈을 플렉서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완구용 신발류는 제외한다)
41	640230	보호용금속 토탑을 넣은 신발(바깥 바닥 및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6401호의 방수용 신발류, 스포츠용 신발류 및 정형외과용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42	640291	발목을 덮는 신발류(바깥 바닥 및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보호용 금속 토탑을 넣은 신발류, 제6401호의 방수용 신발류, 스포츠용 신발류, 정형외과용의 신발류 및 완구용 신발류는 제외한다)
43	640319	기타
44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5	640330	가죽 갑피의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탑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46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7	640359	기타 신발류
48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9	640411	스포츠용신발류(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및 갑피를 방직용 섬유제로로 만든 것에 한한다)
50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것

51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52	640590	기타
53	640699	중간 내지 안창
54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55	7419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동제품
56	821591	스푼·포크·국자·스킴퍼·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개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귀금속으로 도금된 비금속제의 것에 한하며, 바다가재 커터 및 가금용 가위와 같은 물품의 세트는 제외한다)
57	830230	기타
58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59	842490	부분품
60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1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62	850490	부분품
63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4	851290	부분품
65	851790	부분품
66	852990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텔레비전용 송수신기기, 텔레비전카메라,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및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레이더기기, 무선항해보조기기 또는 무선원격제어기기 및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67	853400	인쇄회로
68	853630	기타
69	853650	전동기용의 스타터
70	853929	전기 필라멘트 램프(램프 전력 200와트 이하 ·100볼트 초과의 텅스텐 할로겐 램프 및 자외선램프 내지 적외선 램프는 제외한다)
71	853939	방전램프(형광, 열 음극형 램프·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자외선 램프는 제외한다)
72	854091	음극선관의 것
73	854389	기타
74	854441	(80볼트이하의 것에 한하며, 절연한 것, 접속자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75	8708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트랙터용, 10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용,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 자동차 및 기타 차량용, 상품 운송용 자동차 및 특수 목적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76	8714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자전거용 부분품과 부속품
77	901380	기타의 기기
78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80	910119	기타
81	910121	자동권식의 것
82	910129	기타
83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84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5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6	910221	자동권식의 것
87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88	910299	기타
89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90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1	911180	기타의 케이스
92	911190	부분품
93	911290	부분품
94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95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6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시계용 보석
98	911430	문자판
99	911440	지판과 브리지
100	940490	침구이불 제품(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에 한하며, 메트리스·서포트·매트리스·슬리핑 백·공기 또는 물 메트리스 및 벼개·모포 및 커버를 제외한다)

미 얀마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쎔-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6.90	- 기타
11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2	4202.19	- - 기타
13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14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5	4202.29	- - 기타
16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7	6211.20	- 스키슈트
18	6216.00	장갑류
19	6401.10	-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20	6401.91	- - 무릎을 덮는 것
21	6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22	6401.99	- - 기타
23	6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24	6402.19	- - 기타
25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라스틱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26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27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28	6402.99	- - 기타
29	6403.12	-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 부츠
30	6403.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염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31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32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33	6403.51	- - 발목을 덮는 것
34	6403.59	- - 기타
35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36	6403.99	- - 기타
37	6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38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것
39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40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41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42	6406.91	- - 목재제의 것
43	6914.90	- 기타
44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5	8207.30	- 프레싱·스텝핑 또는 편침용의 공구
46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7	8413.30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48	8421.21	-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49	8421.22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50	8421.23	-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51	8421.29	- - 기타
52	8421.31	-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53	8424.90	- 부분품
54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5	8480.71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56	8504.31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57	8504.40	- 정지형 변환기
58	8504.90	- 부분품
59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0	8512.90	- 부분품
61	8516.80	- 전열용 저항체
62	8534.00	인쇄회로 [ITA1/A-072]
63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64	8536.50	- 기타의 개폐기
65	8536.69	- - 플러그와 소켓
66	8536.90	- 기타의 기기
67	8538.90	- 기타
68	8539.29	- - 기타
69	8539.39	- - 기타
70	8708.99	- - 기타
71	8714.99	- - 기타
72	9013.80	- 기타의 기기
73	9101.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4	9101.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5	9101.19	- - 기타
76	9101.21	- - 자동권식의 것
77	9101.29	- - 기타
78	9101.91	- - 전기구동식의 것
79	9101.99	- - 기타
80	9102.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1	9102.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2	9102.19	- - 기타
83	9102.21	- - 자동권식의 것
84	9102.29	- - 기타
85	9102.91	- - 전기구동식의 것
86	9102.99	- - 기타
87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8	9111.20	- 2.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9	9111.80	- 기타의 케이스
90	9111.90	- 부분품
91	9112.20	- 케이스
92	9112.90	- 부분품
93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94	9113.20	- 2.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5	9113.90	- 기타

96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 시계용 보석
98	9114.30	- 문자판
99	9114.40	- 지판과 브리지
100	9114.90	- 기타

필리핀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기타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3	4203.10	- 의류
4	6107.1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
5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6	6107.91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7	6107.92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8	6108.2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9	6108.2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0	6108.9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1	6108.9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12	6108.99	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3	6111.20	면제의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4	6114.20	면제의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5	6117.10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6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7	6201.1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8	6201.1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9	6201.9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0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1	6202.12	면제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2	6202.13	인조섬유제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3	6202.9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4	6202.93	인조섬유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5	6203.12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26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27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8	6203.3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9	6203.3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0	6203.4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1	6203.4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2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3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4	6204.1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5	6204.1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6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7	6204.3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8	6204.3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9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40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1	6204.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2	6204.4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3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4	6204.49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5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6	6204.5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7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8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49	6204.6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0	6204.6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1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2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3	6205.30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4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6	6206.30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7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8	6207.2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59	6211.20	스키슈트
60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1	6211.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	6211.43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3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64	6213.20	면제의 손수건
65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6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7	6214.30	합성섬유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8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9	6302.3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70	6302.5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71	6302.53	인조섬유제의 기타 베드린넨
72	6303.91	면제의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벨란스(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73	6304.92	면제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74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75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 부츠 (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76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신발류
77	6406.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78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79	7113.11	은제(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80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제품
81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제품
82	7117.11	비금속제(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83	7315.20	스키드 체인
84	8207.30	프레싱·스탭핑 또는 편침용의 공구
85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기계
86	8421.29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7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8	9013.80	기타의 기기
89	9101.91	전기구동식의 기타 시계(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0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시계 케이스
91	9111.20	비금속제의 시계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2	9111.80	기타 시계 케이스
93	9111.90	시계 케이스의 부분품
94	9112.20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
95	9112.90	이 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
96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7	9113.20	귀금속제의 것 또는 비금속제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8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9	9114.20	시계용 보석
100	9114.40	지판과 브리지

싱가포르

연번	HS 코드	품명
1	4202.19	기타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2	4203.1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
3	4203.21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장갑류
4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5	6107.12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
6	6107.91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7	6107.92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8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9	6108.2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0	6108.2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1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2	6108.91	면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3	6108.92	인조섬유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4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5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16	6115.93	합성섬유제의 기타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7	6117.20	넥타이류
18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9	6201.1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0	6201.1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1	6201.92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2	6201.93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3	6202.1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4	6202.13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5	6202.92	면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6	6202.93	인조섬유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7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양상블
28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9	6203.3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0	6203.3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31	6203.49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32	6204.1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3	6204.3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4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35	6204.5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36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7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8	6205.30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9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40	6207.2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41	6211.20	스키슈트
42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43	6211.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44	6211.43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45	6212.10	브래지어
46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손수건
47	6213.20	면제의 손수건
48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손수건
49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0	6302.3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51	6302.32	인조섬유제의 기타 베드린넨
52	6302.51	면제의 기타 테이블 린넨
53	6302.53	인조섬유제의 기타 테이블 린넨
54	6302.9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55	6303.92	합성섬유제의 기타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벨란스
56	6304.19	기타 침대덮개
57	6304.92	면제(메리야스펜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의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58	6401.10	보호용금속 토탑을 넣은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쿠루링·풀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59	6401.91	무릎을 덮는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쿠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0	6401.92	발목을 덮는 (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쿠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1	6401.99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쿠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2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63	6402.20	신발(갑피끈을 풀려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64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탭을 넣은 것에 한한다)
65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6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탭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67	6403.91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류
68	6404.19	기타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9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신발류
70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71	6406.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72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73	7113.11	은제(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신변장식용품
74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제품
75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제품
76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모조
77	7315.20	스키드 체인
78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기타 스푼·포크·국자·스킴퍼·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79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0	8714.9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81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팔목시계(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2	9101.29	자동권식의 것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83	9101.91	전기구동식의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84	9101.99	전기구동식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85	9102.21	자동권식의 기타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6	9102.91	전기구동식의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여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7	9102.99	전기구동식의 것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8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시계 케이스
89	9111.20	비금속제의 시계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0	9111.80	기타 시계 케이스
91	9111.90	시계 케이스의 부분품
92	9112.20	클록케이스
93	9112.90	클록케이스의 부분품
94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5	9113.20	비금속제(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6	9114.10	클록 또는 시계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클록 또는 시계 시계용 보석
98	9114.30	클록 또는 시계 문자판
99	9114.40	클록 또는 시계 지판과 브리지
100	9502.91	사람모형의 인형의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베트남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3	420219	- - 기타
4	420291	-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5	42029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6	420299	- - 기타
7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8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	610799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6108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1	611720	- 넥타이류
12	62032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6205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4	621120	- 스키슈트
15	6211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6	621142	- - 면제의 것
17	621210	- 브래지어
18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19	621290	- 기타
20	621310	- 기타:
21	621320	- 면제의 것
22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3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4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25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26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7	630251	- - 면제의 것
28	630253	- - 인조섬유제의 것
29	630291	- - 면제의 것
30	630293	- - 인조섬유제의 것
31	630391	- - 면제의 것
32	630392	- - 합성섬유제의 것
33	630419	- - 기타
34	630492	- - 면제의 것(메리아스펀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35	640110	- 보호용금속 토탑을 넣은 신발
36	640191	- - 무릎을 덮는 것
37	6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38	640199	- - 기타
39	6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40	640219	- - 기타
41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탑을 넣은 것에 한한다)
42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43	640299	- - 기타
44	640312	- -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 부츠
45	640319	- - 기타
46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탑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47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탑을 넣은 것에 한한다)

48	640351	- - 발목을 덮는 것
49	640359	- - 기타
50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51	640399	- - 기타
52	640411	- - 스포츠용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53	640419	- - 기타
54	6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55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것
56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57	640590	- 기타
58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59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60	640691	- - 목재제의 것
61	640699	- - 기타 재료제의 것
62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63	711311	-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4	711319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66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67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68	711711	-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69	711719	- - 기타
70	711790	- 기타
71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2	901380	- 기타의 기기
73	9101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74	910119	- - 기타
75	910121	- - 자동권식의 것
76	910129	- - 기타
77	910199	- - 기타
78	9102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2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0	910291	- - 전기구동식의 것
81	910299	- - 기타
82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3	911120	-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4	911180	- 기타의 케이스
85	911190	- 부분품
86	911290	- 부분품
87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8	911320	-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9	911390	- 기타
90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1	911420	- 시계용 보석
92	911430	- 문자판
93	911440	- 지판과 브리지
94	911490	- 기타
95	940490	- 기타
96	95021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7	950291	-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8	950341	-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99	950349	- - 기타
100	950390	- 기타